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 999 호 2016. 3. 17. (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56호[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57호[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 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58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59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60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61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62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63호[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22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47호[도로명주소 고시] 2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48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8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293호[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접용·사용) 허가 공고] 3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295호[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계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2016년 3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56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姓)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공

인증개사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같은 조 제5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따른다.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같은 조 제4항 중 “내지”를 “부터”로 하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로 하고,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은 “위촉위원에게는”으로 하고, “범위안에 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확대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원 추가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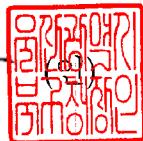
-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부동산평가 관련자 등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추가

다.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2016년 3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법 제3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p>1. 대표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p> <p>1) 개인: 전년도 재산세 등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p> <p>2)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p> <p>2.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3.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설 및 충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p> <p>4.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p> <p>5. 액화석유가스 충진시설 중 저장설비·충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¹⁾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진장소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p>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 영업소	<p>1.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를 금지 한다.</p> <p>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p> <p>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m²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p> <p>5. 사무실의 면적은 9m² 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p> <p>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m²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p>

주)보호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규제개혁 개선대상으로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 충전소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저장능력 제한 및 저장설비, 탱크로리 이입, 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이격거리설정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 개정 함.

2. 주요내용

-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근거조항 변경(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 제5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 제6조제2항
- 나. 상위 법령을 벗어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 정비(제4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2016년 3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5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록물전문관리기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의 새긴사람란 중 “성명”을 “성명 및 상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폐기방법란 중 “□소각 □이관 □기타”를 “□이관 □기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	(인 영)	등록일	년 월 일	
		새긴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 <u>성명 및 상호 :</u> <u>생년월일 :</u>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료		
		교부사유		
		공보공고	년 월 일 (제 호)	
비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방법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자	소속 : 직급 : 성명 :	
		공보공고	년 월 일 (제 호)	
		비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14. 8. 7.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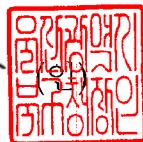
2. 주요내용

- 가. 공인의 폐기 시 이관 기관명 정비사항 반영 (제10조제2항)
 - 기록물전문관리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나. 별지 제1호서식(공인대장)에서 새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 일”로 개정하고, 기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 개정.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성명” ⇒ “성명 및 상호”
 - 폐기방법란 “□소각” 삭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2016년 3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5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숙박료”를 각각 “숙박비”로 한다.

별표 2 중 “현지교통비”를 각각 “일비”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 동 차 운 입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 한다.
- 선박운임의 정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제3조제2항의 여비구분과 별표 2의 여비의 명칭이 상이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제3조의 여비구분에서 '숙박료'를 '숙박비'로 개정함. (제3조제2항)
 - 운임 · 일비 · 숙박료 · 식비 ⇒ 운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나. 별표 2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하고,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 '현지교통비' ⇒ '일비'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2016년 3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6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신고서의 신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피신고자란의 “피신고자”를 “신고대상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대상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 . . 신 고 자 (서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14. 8. 7.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7호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비 및 기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함.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피신고자” ⇒ “신고대상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전 동



2016년 3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6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원 1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의장은 의원 개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개인자격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판결)를 근거로 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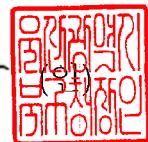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추천자 규정 개정(제4조제3항제2호)
 -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 '의원 1명'으로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전 동



2016년 3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6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매년 7월 10일”을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 · 시행(개정 2014. 5. 28. 시행 2014.11.29.)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 및 결산서 제출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 정례회 집회일 조정(제4조제1호)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 매년 7월 10일 (기존) ⇒ 매년 6월 10일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2016년 3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863호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돋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시설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제1조 ~ 제3조)
- 나.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4조 ~ 제6조)
- 다.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복지시설 확충, 협력체계의 구축 등(제7조 ~ 제10조)
- 라. 예산의 지원,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 ~ 제13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47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6길 3(진장동)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 241 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3.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증정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면준지구 21B 10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6길 3	2016-03-17	옛 지명이던 현지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으로 도로명을 부여 2004-12-27		
2	울산광역시 북구 회봉동 1152-15	울산광역시 북구 회동15길 31-14	2016-03-17	학동은 학봉의 옛 지명이며 단체가 접접0 일 이전 곳에 자리한 다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 2010-04-27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면준지구 878 9L	울산광역시 북구 명준18길 6-1	2016-03-17	옛 지명이며 현지도 사용하는 명칭으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4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면지구 208 14L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3길 12	2016-03-17	수동마을명칭을 사용하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5	울산광역시 북구 청평동 759-8	울산광역시 북구 하원지2길 4	2016-03-17	기존 지역명을 인허원지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6	울산광역시 북구 청찰면준지구 268 3,1	울산광역시 북구 진찰7길 3-6	2016-03-17	옛 지명이며 현지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으로 도로명을 부여 2004-12-27		
7	울산광역시 북구 진찰면준지구 748 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길 14-13	2016-03-17	옛 지명이며 현지도 사용하는 명칭으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 - 4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별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하원지2길 4(창평동) 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3. 17.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번호	도로명주소	총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하원지2길 4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759-8	2016-03-17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길 14-13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명촌지구 74B 1L	2016-03-17	건축물 멸실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3.5>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2016-293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소하천명		돌논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120-1번지 외 1필지		
	면적	701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 간	2016. 3. 17. ~ 2020. 12. 31. (공사기간 : 2016. 6. 31.까지)		
	목적 및 사유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사방댐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m²(제활용품)]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 295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4조제2항 중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을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년 3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구성) ① (생략)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u>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u> ③④ (생략)</p>	<p>제1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가 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u>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p>	<p>제20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가 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u>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생략) ②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u>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u>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③ (생략)</p>	<p>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③ (현행과 같음)</p>
<p>제32조(보조금의 반화) 1. ~ 3.(생략) <u>4. 법 또는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u> 5. (생략)</p>	<p>제32조(보조금의 반화) 1. ~ 3.(현행과 같음) <u>4. <삭제></u> 5. (현행과 같음)</p>